

# 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71,803,339	17,154,100
일반회계	547,259,141	16,417,774
특별회계	24,544,198	736,326
기타특별회계	24,544,198	736,326
상수도사업	4,393,531	131,806
하수도사업	4,144,441	124,333
수질개선	7,808,226	234,247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50,630	13,519
의료급여기금	663,256	19,898
소득특화사업	5,115,113	153,453
농공단지조성사업	1,276,658	38,300
공영개발사업	596,714	17,901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95,629	2,86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,417,357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